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판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8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6일

발 의 자 : 최판술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희걸, 문영민, 한명희,
신원철, 김영한, 박기열, 김동승,
김용석(도봉), 성중기, 이현찬,
김진철, 김구현, 박호근, 남재경,
김경자(강서), 황준환, 김선갑,
강구덕, 이순자 의원(20명)

1. 제안 이유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 전액 출자하였고, 공익적 목적의 사업시행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시설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이사장의 해임기준을 반영함(안 제7조)

나.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31조 삭제)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0억 원”을 “300억 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연임기준”을 “연임 및 해임 기준”으로,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 본금은 <u>300억원</u> 으로 하고, 서울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 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생 략)	제4조(자본금) ① ----- ----- <u>300억 원</u>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u>연임</u> <u>기준</u> 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58조제4항</u> 에 따른다.	제7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연임</u> <u>및 해임 기준</u> ----- ----- <u>제58조제4항 및</u> <u>제5항</u> --. <u><삭 제></u>
제31조(공단재산의 무상사용) 시 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 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 ----- ----- ----- -. <u>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u> <u>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u> <u>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u> <u>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u> <u>제법」을 따른다.</u>
제3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 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다. <u>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u> <u>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u> <u>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u> <u>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u> <u>제법」을 따른다.</u>	제33조(과태료) ----- ----- ----- ----- -. <u>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u> <u>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u>